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이명희 의원 외 12인

2. 제안이유

○ OECD가 발표한 ‘OECD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업데이트 2023’에 따르면 한국의 2018년, 2019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각각 206조 8천억 원(GDP 대비 10.9%), 235조 9천억 원(12.3%) 증가하고 있음.

전체 OECD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평균은 20.1%로, 많은 국가들이 공공사회복지지출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복지가 곧 국민의 삶과 직결이 되어 있으며, 복지국가에서 활발한 경제활동과 높은 성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임.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가 최일선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유급병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안 제8조제1항제7호)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사회복지사 유급병가에 대한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현행	개정안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권익보호,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생략) ② (생략)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 ----- ----- ----- ----- -----. 1. ~ 6. (현행과 같음) <u>7. 사회복지사 등의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사업</u>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개정안 제8조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 사업에 유급병가의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도내 최초로 사회복지사의 건강권 보장 및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인권 및 구미시민의 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경상북도와 관내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시설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명확한 기준 마련, 기본계획수립 및 대체인력 지원 방안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별표 (참고자료)

○ 관내 시설현황

출처 : 구미시청 사회복지국(2023. 11. 30.)

구분	전체시설			국고지원시설			지방이양시설		
	계	생활	이용	소계	생활	이용	소계	생활	이용
시설 수	608	61	547	486	5	481	122	56	66
종사자 수	2,074	1,247	827	231	43	188	1,843	1,204	639

○ 타 지자체 시행현황

출처 : 2022년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구 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제주	세종
유급병가 제도	○	○	○	○	○	○	○	○	X	X	○	X	X	X	X	○	X

<대체인력지원사업>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안내 지침]

- 지원대상 : 직접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및 조리원
 - ▶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우선지원 가능
 - ▶ 소규모 시설(5인 이하) 돌봄서비스 겸직 시설장 지원 가능
- 지원사유 : 휴가, 교육, **병가**, 공가, 긴급사유 등으로 인한 시설종사자 결원
- 지원기간 : 동일한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파견은 1회 연속 7일 이내(주중 휴일, 주말, 휴일·휴무일 포함, 이월불가)로 하되,
 - ▶ 신청 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 대체인력 운영 상황, 복지혜택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초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 다만, 동일한 종사자에 대해 병가 등 특정사유로 지원기간 초과사유 발생 시 지역별 상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지침으로 별도 정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파견 가능**. 이 경우 시설지원 우선순위, 지원근무 비율 등을 고려하여 특정시설에 파견이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